

忠清北道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

檢討報告

1. 提出者：忠清北道知事

2. 提出日字 및 回附日字

가. 提出日字 : 1992年 4月 1日

나. 回附日字 : 1992年 4月 1日

3. 提案理由

- 地方財政法 第16條의 2의 規定에 依據 地方財政計劃 審議委員會 條例를 制定, 運營
도록 되었 있음.
- 内務部에서 示達된 準則에 依하여 忠清北道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를 制定코자 함.

4. 主要骨子

○ 構成

- 委員長 : 副知事
- 副委員長 : 企劃管理室長
- 委員 : 關聯室・局長, 地方議會議員, 專門分野教授, 地域代表等으로 構成
여 道知事が 委嘱한 者

○ 機能 : 地方財政計劃樹立에 關한 道知事의 諸問에 應함.

- 地方財政 運營方向에 關한 事項
- 財源調達에 關한 事項
- 投資事業 樹立에 關한 事項
- 其他 道知事が 附議하는 事項

5. 檢討意見

地方財政計劃의 權威와 實効性을 確保하기 為하여

- 地方財政法 第16條의 2 規定에 依據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서 地方財政計劃 審議委員會 條例를 制定 運營토록 되어있으며
- 内務部에서 示達된 準則에 依하여 忠清北道 地方財政計劃 審議委員會 條例를 制定코자 하는 것으로서
- 地方財政 運營方向에 關한 事項이나 投資事業樹立, 地方財政計劃 樹立에 關한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諸問役割, 機能遂行을 위하여 忠清北道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 條例를 制定할 必要性이 認定되는 바 本 條例案의 制定은 安當하다고 思料됨.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벌지로다가 설명이 있었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 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의 형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어떤것을 우리는 선택을 하느냐 이런 문제겠죠.

- 이광호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연권 이광호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광호위원 이광호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출범을 하고 또 도의회가 그동안 많은 회의를 거쳐왔지만 사실 법령에 구속이 되고 또 심지어는 내부부령에 구

속되는 지방자치제도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이 많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계획관계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권한이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재정계획 자체는 이것은 집행단체장의 자문기관으로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만 하고 내부부에 상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재정법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법 자체가 모순이 되지 않느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실감하고 있지만 당장 법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도 없는 전제 이 심의위원회에 이것이 집행단체장의 자문기관에 우리 의원들이 꼭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 또 구성후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않느냐 해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각 시·도별로 여러가지 문제가 되어있고 여기에 의원 참